

수원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나55040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나55040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 9 선고 2018가단10490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면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윤대기

변론 종결 2019. 9. 6.

판결 선고 2019. 10. 25.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 9. 선고 2018가단10490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7. 7. 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7. 7. 3. 접수 제833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희찬

판사이용희

판사김경인

별지